

▶ 기초강연

생활과학 연구와 윤리¹⁾

백 희 영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생활과학은 인간의 생활환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의 생활의 각 영역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의 특성상 생활과학분야의 연구는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술학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학문 또는 복합학문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생활과학 연구의 윤리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이러한 분야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많은 논란과 불미스러운 사례가 알려져서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많이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란 고도의 학문적 활동으로 그 결과나 윤리성에 대하여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 학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과학과 과학자의 윤리적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도 많다. 따라서 연구 활동에 대한 학자들의 개별적인 윤리와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한국학술단체협의회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정책과제로 2006년 “학술단체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연구 도덕성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활과학은 종합학문, 복합학문의 성격이 크므로 여기에서 연구보고 내용 중 “복합학문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문

복합 학문 분야의 연구는 관련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과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

1) 본 원고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서 수행한 “학술단체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헌장제정 및 연구 도덕성 제고 방안 연구”(정책연구-2006-윤리01) 중 “복합학문분야”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된다. 따라서 복합 학문 분야의 연구자는 관련된 여러 학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식과 연구방법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윤리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 학술지 발간 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자가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지침에서는 복합 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알고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원칙과 규정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이러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기관, 학술지 발간 기관, 학술연구 지원기관 등에서 마련해야 할 연구 윤리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반적 원칙

다음은 연구자들이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윤리와 관련된 일반적 원칙들이며 이 원칙들은 세부적인 윤리 지침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 학문적 수월성과 창의성 (Competence and creativity)

연구자들은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수월성을 갖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 노력하며 필요한 자료(resource)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전문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교육과 훈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만을 수행한다.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므로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2. 진실성 (Integrity)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가 한다.

3. 인권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People's Rights)

연구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 가치, 다양성을 존중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과 태도를 존중하며,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장애, 결혼 지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대상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4. 책임성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가진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적 연구절차에 충실하며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연구를 수행할 때 학문 발전과 함께 공익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III. 연구자의 윤리 지침

1. 연구자는 전문 지식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지식의 오용을 막는다.
 - A. 연구자는 연구나 교육을 할 때, 혹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전문 지식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전문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 B. 연구자는 이력서, 홍보자료, 안내책자나 인쇄물, 대중 매체와의 인터뷰 및 자문, 강의와 공적인 구두 발표 또는 기타 출판물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한다.
 - C. 연구자의 과학적, 전문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제 3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지식과 전문성을 오용할 수 있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또는 정치적 요인을 경계한다.
 - D. 연구자는 본인 연구 결과의 오용, 또는 오보를 알게 되었을 때, 오용이나 오보를 정정하거나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 E. 연구자는 본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하기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기관 혹은 후원자의 제의, 계약, 자문 또는 연구 과제를 거부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책임지는 학생, 훈련생, 피고용인을 적절히 지도, 감독하며 권한 위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A. 연구자는 학생, 훈련생, 피고용인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감독하며, 이들이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지 살필 의무가 있으며 이들의 경력을 발전시키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 B. 연구자는 학생, 훈련생, 피고용인이 과학적인 능력과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발전시키도록 훈련시키고 경험을 전달한다.
 - C. 연구자가 학생, 훈련생, 피고용인에게 책임을 위임할 때에는 이들의 교육, 훈련, 경험의 정도에 따라 이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위임한다.

- D. 연구자는 학생과 피고용인의 연구 기여를 인정하고 결과를 출판하거나 발표할 때 기여에 적합한 저자 권한을 인정한다.
 - E. 연구자는 다양성이 권장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3. 연구자는 연구, 교육, 업무수행 등에서 이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적합한 관계자에게 이해 갈등을 공개한다.
- A. 개인적 이익, 경제적 이익, 고용주나 의뢰인 등과 상관없이 연구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연구 관련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i.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 ii. 연구 보고
 - iii. 교육, 전문적인 발표, 대중에 대한 홍보
 - iv. 계약이나 자문 활동의 수행이나 감정
 - B. 연구자는 연구비 출처 및 연구지원자, 고용주, 의뢰인 등과의 이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명백하게 밝힌다.
4.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5. 연구자는 연구 윤리 규정에 맞추어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를 시작하기 전 소속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연구자는 연구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연구의 계획, 수행과 홍보에서 과학의 윤리를 따라야 하며, 각 과정에서 연구의 정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 A. 계획과 수행
 - i. 연구자는 연구 계획과 수행에서 연구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ii. 연구자는 연구 수행 중,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연구 참여자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iii. 연구 계획 및 수행에서 연구자는 조사 중이거나 혹은 연구에 영향을 받는 특정 집단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한다.
 - iv. 연구자는 연구자 본인 및 연구자 책임 하에 있는 연구원과 학생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

- B. 연구자가 미리 계획되지 않은 연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구가 윤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informed consent를 받았는지, 또한 연구 내용이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윤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7.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Falsification), 날조(Fabrication), 표절(Plagiarism)을 하지 않는다.
- A. 연구자는 출판물이나 발표에서 자료를 변조, 날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다.
 - B.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 결과를 전부 보고하고 명백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다.
 - C.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특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가정이나 이론적 근거를 밝힌다.
 - D.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에는 방법과 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공개 조사와 검증을 허가한다.
 - E. 연구자가 출판물이나 발표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정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연구자는 논문에 연구비 출처를 밝히고 지원자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지한다.
 - G.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할 때, 정확한 정보와 인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학문 활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공유한다.
- A. 연구자는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나 논문이 출판된 후에, 고용주, 계약자,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자료의 비밀성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자료를 공개한다.
 - B.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적당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 C. 연구자는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 D.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자료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려는 연구자는 자료의 출처와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

9.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연구 결과의 출판, 발표, 교육, 업무 수행에서 이를 절대 행하지 않으며 다른 연구자의 표절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막거나 정정해야 한다.
 - A.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B.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연구자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 C.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 문헌을 명시한다.

10.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한다.
 - A.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에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된다.
 - B. 모든 저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에 따른 책임이 있다.
 - C. 학생의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주 저자가 된다.

11. 연구논문은 명백히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출판하지 않는다.
 - A.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술지 발간 기관과 소속 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 B. 중복출판을 허용하는 학술지와 발간 기관은 그 기준을 명시하고 출판물에 이를 정확히 제시한다.

12. 연구자는 학문 분야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윤리적 기준에 맞는 연구자의 양성을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A.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i. 연구 훈련이나 전문교육과정의 일부로 윤리 교육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 ii. 윤리 교육에 책임이 있는 연구자는 경험을 전수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
 - iii. 윤리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단계별로 실시한다.
 - iv. 강사와 조교는 프로그램 과정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학생이 쉽게 배우도록 하는 강의 기술이 있는 자로 한다.

B. 교육

- i. 연구자는 교육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연구자는 적합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
- ii. 연구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iii. 연구자는 교재, 교육 과정, 이수 필수 조건들을 결정하며, 경제적이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육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점수를 준다.
- iv. 연구자는 강의 조교 및 강사들을 적절하게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며 이들의 강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
- v. 연구자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학문적으로 견해가 다른 동료와 학생의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다.

13. 연구자들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 본 윤리 지침을 충실한 이행하여야 한다.

IV. 연구기관의 윤리지침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연구하고 교육하며 연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이다. 모든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 인력들이 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전임 연구원 이외에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생, 훈련생, 연구 보조 인력들이 있으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연구기관은 이러한 교육과 훈련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 윤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속 연구원들이 윤리적인 연구를 위하여 각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연구윤리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의 기본 원칙

- 소속된 연구자들이 진실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한다.
- 연구 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 학생, 또는 고용인 사이의 발전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지침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이해관계에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고하고 관리한다.
- 연구 과정의 문제점과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기관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적절한 행정적 처벌을 한다.
- 연구자가 연구의 진실성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교육을 시행한다.
- 연구자가 연구의 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지식을 익힌다.

1. 연구기관은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
 - A. 연구의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법과 국제적 연구 윤리에 적합한 기관 윤리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각기 다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B. 기관윤리심의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연구윤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윤리성을 검토한다.

2. 연구기관은 내부고발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통로를 마련하여 공지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 A. 연구기관은 연구의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을 때, 그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적절한 절차로 심의하고 심의기간에는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 B.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는 동료 연구자나 소속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기관에서 보호한다.

3. 소속 연구자가 진실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기관은 지속적인 자체평가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나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인력이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연구자와 연구 인력에 대하여 적절한 윤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A. 연구원, 학생, 고용인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 B. 연구윤리와 관련된 국제적, 국내적 변화를 주지하고 이를 소속 연구원들에게 알린다.
 - C.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V. 학술지 발간기관의 윤리지침

학술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주요 경로이며 전문분야의 학자들이 학문적 교류와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편집자와 심사자는 제출된 원고를 심사하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중복출판, 날조, 변조, 표절 등의 학문적 비행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편집자는 이러한 학문적 비행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나 심사자는 논문이 출판될 때까지 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개인적인 이해갈등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심사자의 책임

- A. 제출된 출판물을 심사할 때, 심사자는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 B. 심사자는 심사의뢰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 C. 심사자는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D. 심사자는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 E.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자나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자의 책임

- A. 편집자는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B. 편집자는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의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C. 편집자는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D. 편집자는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E. 편집자는 같은 분야 학자의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F. 편집자는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 G. 편집자는 심사 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H.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 I.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 J. 새로운 편집자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 K. 편집자는 저자들과 같은 분야의 논문 심사를 하는 심사자들을 위한 학술지 안내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3. 중복출판

- A. 학술지 발간 기관은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B. 학술지 발간 기관은 위와 같은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C. 학술지 발간 기관은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4. 연구 윤리 확인

- A. 학술지 발간 기관은 제출된 모든 논문에 대해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 B. 편집자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논문에 명기한다.
- C. 학술지 발간 기관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연구 기관에 고지한다.

5. 부정행위의 추적

- A. 편집자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 B.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한 결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VI. 학술연구 지원기관의 윤리지침

학술연구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학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학술 연구는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으므로 지원기관은 정책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과 학술단체활동 지원에서 연구 윤리 지침을 명확히 제정하고 충실히 지키는 연구자와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연구윤리 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지원과 학술단체 지원에 주로 양적 기준을 적용하므로 각 연구자들은 논문 편수를 늘리는 데에 급급하며 학술단체들 또한 논문이나 발표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연구와 활동은 결국 가치를 상실하므로 각 연구자와 학술단체들이 학문 윤리를 지키는 것이 지원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윤리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는 연구 환경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연구, 연구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 환경과 진실된 연구 수행 사이의 관계를 알고자 계획된 연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나 기관에 구애 받지 않고 연구비를 지원한다.

2. 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윤리 준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제공한다.
 - A. 연구비 지원 과제를 선정할 때, 계획서 작성에 연구 윤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넣는다.
 - B.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 과제가 연구를 준비하고 연구 내용의 윤리적 검토를 하고 소속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를 보장한다.
 - C.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과제가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연구의 윤리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밝혀진 경우, 연구의 진실성에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 연구비 지원을 중단한다.
 - D.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 과정이 윤리적이고 진실된 경우, 모든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결과의 왜곡을 요구할 수 없다.

3. 연구 과제의 선정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제출자의 권한을 보호한다.
 - A. 연구비를 지원할 연구 과제를 심의할 때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의 인적 사항을 익명으로 한다.
 - B. 연구비 지원을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한다.
 - C.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고 심사의뢰자는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관에 알린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
 - D.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 과제가 소속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책임이 있다.
 - E. 연구비 지원 기관은 심의 중인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원 및 소속연구기관과의 어떠한 이해갈등관계도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이해갈등관계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4.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은 지원받는 학술단체들이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5. 학술지 발간에서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학술지의 지원을 확대한다.
 - A. 이중게재, 날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비행자에 대한 적발과 제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B. 심사자 및 편집자에 대한 윤리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 C. 논문투고자, 심사자, 편집자에게 윤리규정과 원칙을 알리고 교육한다.
6. 학술대회 지원에서 발표자의 수보다 발표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참 고 자 료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de of Ethics and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ASA Committee on Professional Ethics, 1999. Accessed on line, Aug. 25, 2006.
- Committee on Assessing Integrity in Research Environments, National Research Council, Institute of Medicine. Integrity in Scientific Research. National Academy Press, 2002.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 Code of conduct for editors of biomedical journals. Accessed on line, Aug. 25, 2006.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Institute of Medicine. On Being a Scientist: Responsible Conduct in Research. (2nd ed.), 1995.
- The House Committee on Commerce and the Senate Committee on Labor and Human Resources. Integrity and Misconduct in Research. USDHH, 1995.